



# 2023년 경기도 더 좋아지는 행정제도



# - 목 차 -

1. 일반행정 분야 .....	1
2. 복지·보건·여성·교육·노동 분야 .....	4
3. 산업·경제, 농어업·축산·산림 분야 .....	18
4. 환경, 도시·교통·건설 분야 .....	24
5. 재난안전, 문화·체육·관광 분야 .....	27

# 1

## 일반행정 분야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민선8기 경기도 조직개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구 : 25실국 6담당관 148과</li> <li>정원 : 16,01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반 : 4,573명</li> <li>- 소방 : 11,445명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구 : 25실국 6담당관 149과(1과 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 신설 : 미래성장산업국, 사회적경제국 등 5개</li> <li>- 과 신설 : 노후신도시정비과, 노동안전과 등 9개</li> </ul> </li> <li>정원 : 16,159명(증 141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반 : 4,706명(증 133명)</li> <li>- 소방 : 11,453명(증 8명)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(’22. 12. 30.)	기획조정실 (기획담당관) 031-8008-4092		○	
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금리 인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 : 1.05%</li> <li>지역개발기금 융자금리 : 1.5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 및 기금 융자금리 인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 : 2.5%</li> <li>- 지역개발기금 융자금리 : 3.0%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, 제5조 (’23. 1. 1.)	기획조정실 (예산담당관) 031-8008-2865	○		
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,600cc이하 승용자동차 신규·이전 등록시 채권 매입 (취득세 과표의 6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,600cc이하 승용자동차 신규·이전 등록시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</li> </ul>	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1 (’23. 3. 예정.)	기획조정실 (예산담당관) 031-8008-2865	○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고향사랑기부제 운영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답례품·세액공제 혜택 제공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(대상)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(광역·기초)</li> <li>-(한도) 개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</li> <li>-(방법) 고향사랑e음 사이트 및 전국 농협 방문접수</li> <li>-(혜택) 기부자는 답례품(기부금의 30% 이내) 및 세액 공제 혜택(10만원 이하 전액, 10만원 초과분의 16.5%)</li> <li>-(사용처)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활용</li> </ul> </li> </ul>	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(’23. 1. 1.)	자치행정국 (자치행정과) 031-8008-3630	○		
청원	○ 청원인이 청원기관에 문서로 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온라인청원시스템(청원24*) 구축운영 *URL: www.cheongwon.go.kr</li> </ul> </li> <li>공개청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청원인이 청원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 가능</li> </ul> </li> <li>청원심의회 설치운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청원의 공개여부, 청원 조사결과 등 심의</li> </ul> </li> </ul>	청원법 제8조~제11조 (’22. 12. 23.)	자치행정국 (열린민원실) 031-8008-3608	○		
경기도민청원	○ 도민청원 성립요건 및 처리 - 30일 동안 5만명 이상 동의 - 실·국장 또는 도지사 답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민청원 성립요건 및 처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0일 동안 1만명 이상 동의</li> <li>- 도지사 직접 답변</li> </ul> </li> </ul>	민선 8기 공약 (’23. 1. 1.)	자치행정국 (열린민원실) 031-8008-3608		○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개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세표준 원칙 : 취득당시의 가액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</li> </ul> </li> <li>다만, 개인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</li> <li>※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세표준 원칙 : 취득당시의 가액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상취득(상속·증여·기부)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원칙: 시가인정액*</li> <li>2) 예외: 시가표준액</li> </ol> </li> <li>- 유상취득 등 : 개인, 법인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격</li> </ul> </li> <li>*시가인정액 : 해당 물건의 매매, 감정가, 경·공매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</li> </ul>	지방세법 제10조~ 제10조의6 ('23. 1. 1.)	자치행정국 (세정과) 031-8008-4154	○		
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동차세 연납시 공제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월(10%), 3월(7.5%), 6월(5%), 9월(2.5%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하향 조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월(7%), 3월(5.3%), 6월(3.5%), 9월(1.8%)</li> </ul> </li> <li>※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축소 예정('24년 5%, '25년 3%)</li> </ul>	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('23. 1. 1.)	자치행정국 (세정과) 031-8008-2443	○		
경기톡D 서비스 확대·개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정보 및 증명서 제공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복지정보 약 1,300여종</li> <li>- 전자증명서 66종</li> <li>- 도민카드 이용처 53개소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인별 맞춤형 도정 정보 서비스 확대 제공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복지, 공무원 채용 + '23년 일반채용, 교육, 문화/축제</li> </ul> </li> <li>전자증명서 발급 종류 확대와 도민카드 이용처 확대 운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약 90종</li> <li>- 도민카드 이용처 : 도내 전 공공시설 확대 운영</li> </ul> </li> </ul>	전자정부법 제43조의 2 ('23. 5. 예정)	경제실 (데이터정책과) 031-8008-3858	○		

## 2 복지·보건·여성·교육 분야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긴급복지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생계지원</li> <li>- 1인 가구 : 583,400원</li> <li>- 4인 가구 : 1,536,300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생계비 지원액 인상</li> <li>- 1인 가구 : 623,300원(39,900원 ↑)</li> <li>- 4인 가구 : 1,620,200원(83,900원 ↑)</li> </ul>	긴급복지지원법 (’23. 1. 예정.)	복지국 (복지정책과) 031-8008-2427	○		
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원기준</li> <li>- 기준 중위소득 90% 이하</li> <li>◦ 생계지원</li> <li>- 1인 가구 : 583,400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기준 완화</li> <li>- 기준 중위소득 100%(10% ↑) 이하</li> <li>• 생계비 지원액 인상</li> <li>- 1인 가구 : 623,300원(39,900원 ↑)</li> <li>• 위기사유 신설(4종)</li> <li>- 가족돌봄 위기가구(영케어러, 치매환자 등)</li> <li>- 과다채무, 빚 독촉, 채무변제 위기가구 등</li> </ul>	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(’23. 1. 1.)	복지국 (복지사업과) 031-8008-2427			○
참전명예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6·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</li> <li>- 1인당 年26만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6·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</li> <li>- 1인당 年40만원 (14만원 ↑)</li> </ul>	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’23. 1. 1.)	복지국 (복지사업과) 031-8008-3363			○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																						
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준 중위소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 가구: 1,944,812원</li> <li>- 4인 가구: 5,121,080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기준 중위소득 인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 가구: 2,077,892원(133,080원 ↑)</li> <li>- 4인 가구: 5,400,964원(279,884원 ↑)</li> </ul> </li> </ul>	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-191호 (’23. 1. 1.)	복지국 (복지사업과) 031-8008-2416	○													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생계급여 선정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 가구: 583,444원</li> <li>- 4인 가구: 1,536,324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 가구: 623,368원(39,924원 ↑)</li> <li>- 4인 가구: 1,620,289원(83,965원 ↑)</li> </ul> </li> </ul>			○													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료급여 선정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 가구: 777,925원</li> <li>- 4인 가구: 2,048,432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 가구: 831,157원(53,232원 ↑)</li> <li>- 4인 가구: 2,160,386원(111,954원 ↑)</li> </ul> </li> </ul>			○													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육급여 선정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 가구: 972,406원</li> <li>- 4인 가구: 2,560,540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 가구: 1,038,946원(66,540원 ↑)</li> <li>- 4인 가구: 2,700,482원(139,942원 ↑)</li> </ul> </li> </ul>			○																								
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현행 3급지 체계</b> (단위 : 만원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급여구분</td> <td>대도시</td> <td>중소도시</td> <td>농어촌</td> </tr> <tr> <td>생계·주거·교육</td> <td>6,900</td> <td>4,200</td> <td>3,500</td> </tr> <tr> <td>의료</td> <td>5,400</td> <td>3,400</td> <td>2,900</td> </tr> </table>	급여구분	대도시	중소도시	농어촌	생계·주거·교육	6,900	4,200	3,500	의료	5,400	3,400	2,9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<b>변경 4급지 체계</b> (단위 : 만원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급여구분</td> <td>서울</td> <td>경기</td> <td>광역시·중랑원</td> <td>기타</td> </tr> <tr> <td>생계·의료· 주거·교육</td> <td>9,900</td> <td>8,000</td> <td>7,700</td> <td>5,300</td> </tr> </table>	급여구분	서울	경기	광역시·중랑원	기타	생계·의료· 주거·교육	9,900	8,000	7,700	5,300	보건복지부 고시 공포 예정 (’23. 1. 1.)	복지국 (복지사업과) 031-8008-2416	○		
	급여구분	대도시	중소도시	농어촌																									
생계·주거·교육	6,900	4,200	3,500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료	5,400	3,400	2,900																										
급여구분	서울	경기	광역시·중랑원	기타																									
생계·의료· 주거·교육	9,900	8,000	7,700	5,300																							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발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요양보호사 자격시험</li> <li>- 시험방식 *지필시험</li> <li>- 자격증 신청접수 및 교부 [광역사도]</li> <li>*연 4회 시험 실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 변경('23년 2월 이후)</li> <li>- 시험방식 * 컴퓨터시험(CBT)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시원 전용 CBT시험센터 전국 9개소</li> <li>• 모니터로 시험문제를 읽고, 마우스로 정답 클릭</li> <li>• 합격자 발표 후 7일 후부터 재응시 가능</li> </ul> </li> <li>-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발급[국시원]</li> <li>• 단체 또는 개인이 온라인 접수</li> <li>* 수시 시험접수 가능</li> </ul>	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3 ('23. 1. 1.)	복지국 (노인복지과) 031-8008-2663 031-8008-2625	○		
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장기요양보험료율</li> <li>- 건강보험료 금액의 12.27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</li> <li>- 건강보험료 금액의 12.81%</li> </ul>	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('23. 1. 1.)	복지국 (노인복지과) 031-8008-2561	○		
노인 무료급식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무료급식(식사배달) 단가</li> <li>- 경로식당 무료급식 1식 3,000원</li> <li>- 재가노인 식사배달 1식 3,500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무료급식(식사배달) 단가 인상</li> <li>- 경로식당 무료급식 1식 4,000원 (1,000원↑)</li> <li>- 재가노인 식사배달 1식 4,500원 (1,000원↑)</li> <li>•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신규 지원</li> <li>- 무료급식 인원 50인 이상, 집단급식소 신고 경로식당 1명/개소</li> </ul>	노인복지법 제4조 ('23. 1. 1.)	복지국 (노인복지과) 031-8008-2529		○	
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장애인 자산형성지원</li> <li>- 대상: 만19세 심한 장애인</li> <li>- 내용: 2년간 월10만원 이내 1:1 연계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지원대상 확대</li> <li>- 대상: 만19~21세 심한 장애인</li> <li>※ 연도말 기준</li> </ul>	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조례 ('23. 5. 1.)	복지국 (장애인복지과) 031-8008-4486		○	

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장애수당 (기초, 차상위 등) 급여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(중전3~6급)</li> <li>- 재가장애인(기초, 차상위): 월 4만원</li> <li>- 보장시설 수급자: 월 2만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수당 지급액 단가 인상</li> <li>- 재가장애인(기초, 차상위): 월 6만원 (2만원↑)</li> <li>- 보장시설 수급자: 월 3만원 (1만원↑)</li> </ul>	장애인복지법 제49조 ('23. 1. 1.)	복지국 (장애인복지과) 031-8008-2414	○		
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(사회재활교사) 배치 기준</li> <li>- 이용장애인 4인당 1인 배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(사회재활교사) 배치 기준 완화</li> <li>- 이용장애인 3인당 1인 배치</li> </ul>	장애인복지법 제81조 ('23. 1. 1.)	복지국 (장애인복지과) 031-8008-4466	○		
신규 설치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기준</li> <li>- 시설 설치신고 1년 후 다음 연도 1월부터 지원</li> <li>※ 지원대상 : 지방이양 법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(단기거주시설·공동생활가정, 지역사회재활시설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기준 완화</li> <li>- 설치신고 완료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지원</li> </ul>	장애인복지법 제81조 ('23. 1. 1.)	복지국 (장애인복지과) 031-8008-2431		○	
법인 운영 단기거주시설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재활교사 및 생활지도원 지원기준</li> <li>- 이용장애인 2.5명당 1명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기준 변경</li> <li>- 시설장 1명 지원</li> <li>- 사회재활교사 및 생활지도원 이용장애인 2.5명당 2명 지원(1명↑)</li> </ul>	장애인복지법 제81조 ('23. 1. 1.)	복지국 (장애인복지과) 031-8008-2431		○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법인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1명 지원</li> <li>- 시설당 보조인력 1명 추가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기준 변경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1명 지원</li> <li>- 사회재활교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 지원(신설)</li> </ul> </li> </ul>	장애인복지법 제81조 ('23. 1. 1.)	복지국 (장애인복지과) 031-8008-2431		○	
지방이양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종사자 인건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지원대상 : 법인운영 지방이양 장애인거주시설(단기, 공동)</li> </ul> </li> </ul>	장애인복지법 제81조 ('23. 1. 1.)	복지국 (장애인복지과) 031-8008-2431		○	
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 :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15세 이상 훈련장애인</li> <li>- 내용 : 훈련장애인 1인당 월 160천원</li> </ul> </li> </ul>	경도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조례 제6조의3 ('22. 11.)	복지국 (장애인자립지원과) 031-8030-3163		○	
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BCG 외 17종 백신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확대(로타바이러스 백신 추가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 : 생후 2~6개월</li> <li>- 내용 :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로타바이러스 백신 23년 상반기 추가 예정</li> </ul> </li> </ul>	감염병예방법 제24조 ('23. 상반기 예정)	보건건강국 (질병정책과) 031-8008-5767	○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법정의무교육 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의무교육 대상</li> <li>- (기존) 구급차 등의 운전자 외 14개 직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의무교육 대상 확대</li> <li>- (추가)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시설 등에서 의료·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</li> </ul>	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(’22. 6. 22.)	보건건강국 (보건의료과) 031-8008-4375	○		
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의무 설치기관</li> <li>- (기존) 공공보건의료기관 외 15개 기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의무 설치기관 확대</li> <li>- (추가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</li> </ul>	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(’22.12.22.)	보건건강국 (보건의료과) 031-8008-4375	○		
경기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위소득 120%이하 지원</li> <li>1인당 연 최대 20만원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</li> <li>1인당 연 최대 36만원까지 지원 확대</li> </ul>	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(’23. 1. 1.)	보건건강국 (정신건강과) 031-8008-4320		○	
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 서비스 제공(치과주치의 검진)</li> <li>- 대상 : 초등학교 4학년생</li> <li>- 지원 단가 : 1인 4만원</li> <li>- 서비스내용 : 구강검사, 구강 보건교육, 예방진료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치과주치의 검진비 인상</li> <li>- 지원 단가 : 1인 48,000원(8,000원 증가)</li> </ul>	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(’23. 5. 예정.)	보건건강국 (공공의료과) 031-8008-4782			○ (서울, 인천)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경기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원 대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보하위 70% 이하*</li> <li>*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준하여 지원</li> </ul> </li> <li>◦ 신청 절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‘영유아 발달평가 안내문’ 발급(공단)→ 보건소 방문 대상자 확인 및 의뢰 → 정밀검사 실시(의료기관) → 검사 결과 확인 및 검사비 지급</li> </ul> </li> <li>◦ 신청 기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, 검사비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음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 대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보하위 80% 이하*</li> <li>*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준하여 지원</li> </ul> </li> <li>• 신청 절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‘영유아 발달평가 안내문’ 발급(공단)→ 정밀검사 실시(의료기관) → 검사 결과 확인 및 검사비 지급</li> </ul> </li> <li>• 신청 기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밀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</li> </ul> </li> </ul>	건강검진 실시기준 (보건복지부 고시) ('23. 1. 1.)	보건건강국 (건강증진과) 031-8030-3273	○		
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유통기한 표시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</li> </ul> </li> <li>•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시행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적용 : 시행일('23.1.1.) 이전 소비기한 표시 허용</li> <li>- 계도기간 : 시행일 이후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 소진 가능토록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 부여</li> </ul> </li> </ul>	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, 식약처 고시 제2022-31호 ('23. 1. 1.)	보건건강국 (식품안전과) 031-8008-3684	○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사항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를 제조하려는 자는 해당 재생원료가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아야 함. 다만,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정*을 거친 재생원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</li> <li>- *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정 : 가열, 화학반응 등에 의한 분해정제중합</li> <li>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</li> </ul>	식품위생법 제9조의2, 제9조의3, 시행규칙 제6조 ('22. 12. 11.)	보건건강국 (식품안전과) 031-8008-3684	○		
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 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2년 상반기 월 12,000원, 하반기 월 13,000원</li> </ul> </li> <li>사업 시행 시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2년 20개 시군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 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2년 상반기 월 12,000원/하반기 월 13,000원 → '23년 월 13,000원(연 156,000원)</li> </ul> </li> <li>사업 시행 시군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2년 20개 시군 → '23년 22개 시군</li> </ul> </li> </ul> <p>* 안산, 평택, 시흥, 김포, 의정부, 광주, 하남, 군포, 양주, 이천, 구리, 안성, 포천, 양평, 여주, 동두천, 과천, 가평, 연천, 화성, 광명, 의왕 (화성, 광명, 의왕 신규참여, 성남 참여 중단)</p>	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('23. 1. 1.)	평생교육국 (청소년과) 031-8008-2559		○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위기청소년 특별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 하는 소득기준 금액으로 가구 소득 산정</li> </ul> </li> <li>○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생활·건강지원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5</li> <li>- 그 외 지원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2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방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보건복지 급여·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른 소득·재산·공제 항목 조회를 통한 자격요건</li> </ul> </li> <li>● 2023년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득인정액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</li> <li>- 기준 중위소득 65% 또는 72% 이하 → 기준 중위소득 <b>100% 이하(확대)</b></li> </ul> </li> </ul>	<p>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[여성가족부고시 제2022-48호] (’23. 1. 1.)</p>	<p>평생교육국 (청소년과) 031-8008-2591</p>	○		
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대상 : 도내 1인가구</li> <li>- 사업량 : 5개 시(성남, 안산, 광명, 군포, 포천시)</li> <li>- 사업내용 : 1인가구 병원 동행(입·퇴원 포함) 지원</li> <li>- 이용요금 : 시간당 5,000원 / 초과 30분 2,500원</li> </ul> </li> </ul>	<p>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(’23. 1. 예정)</p>	<p>여성가족국 (가족다문화과) 031-8008-2487</p>			○ (서울)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</li> </ul> </li> <li>※ 기준중위소득 52% 초과 58%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('22. 10월 ~)</li> <li>◦ 학용품비 지급단가 연 8.3만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</li> </ul> </li> <li>• 학용품비 지급단가 연 9.3만원</li> </ul>	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, 제17조 ('23. 1. 1.)	여성가족국 (가족다문화과) 031-8008-3356	○		
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외국인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 상 : 어린이집</li> <li>- 지원액 : 영유아 1인당 월 22천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외국인 자녀 보육료 일부 지원으로 차별 없는 외국인 보육 기회 제공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대상 :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 (영유아, 만0세~5세)</li> <li>- 지원내용 : 보육료 월 10만원</li> <li>- 지원방식 : 국민행복카드(전자 바우처)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 조례 제6조의2 ('23. 1. 1.) * 영아(만0~2세)는 3월부터 지원	여성가족국 (보육정책과) 031-8008-2572	○		
부모급여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영아수당 지급(2022년 출생아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어린이집 미이용 0~23개월 영아 월 30만원 지급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모급여 지급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대상 : 만 0~1세아(0~23개월) 월 35~70만원 지급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(0~11개월)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월 70만원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지급 후 차액 현금 지원</li> </ul> </li> <li>▸ (12~23개월)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월 35만원 지급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아동수당법 ('23. 1. 1.)	여성가족국 (보육정책과) 031-8008-2573	○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대상 : 지역아동센터, 공동생활가정 등 5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</li> <li>• 내 용 : 종사자 인건비를 기존 고정급에서 호봉제로 전환</li> </ul>	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('23. 1. 1.)	여성가족국 (아동돌봄과) 031-8008-3072			○
아이돌봄 지원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이용시간 및 이용료</li> <li>- 연 840시간, 시간당(이용료) 10,550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 960시간, 시간당(이용료) 11,080원으로 확대 지원</li> </ul>	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('23. 1. 1.)	여성가족국 (아동돌봄과) 031-8008-3922	○		
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1인, 연 1회 25,000원 한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인, 연 1회 30,000원 한도</li> </ul>	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5조 ('23. 1. 1.)	여성가족국 (아동돌봄과) 031-8008-3922			○
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대상 :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월 6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</li> <li>• 지원내용 : 월 5만원 영아돌봄수당 지원</li> </ul>	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5조 ('23. 1. 1.)	여성가족국 (아동돌봄과) 031-8008-3075			○ (서울)

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표준 운영시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학기중) 14:00 ~ 19:00</li> <li>(방학중) 09:00 ~ 18:00</li> </ul> </li> <li>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아침) 07:00 ~ 09:00</li> <li>(저녁) 19:00 ~ 21:00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학기 중 표준 운영시간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학기중) 14:00 ~ 20:00 / 1시간 연장</li> <li>(방학중) 09:00 ~ 18:00 / 동일</li> </ul> </li> <li>저녁 시간 연장 돌봄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아침) 07:00 ~ 09:00</li> <li>(저녁) 19:00 ~ 22:00 / 1시간 연장</li> </ul> </li> </ul>	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4473호 (’23. 1. 1.)	여성가족국 (아동돌봄과) 031-8008-3076	○		
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권역별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개소 운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요업무 : 종사자 교육, 지역 내 돌봄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·군 거점 아동돌봄센터 확대 운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존(4개소) : 화성, 광명, 파주, 여주</li> <li>확대(6개소) : 수원, 성남, 안양, 김포, 이천, 구리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아동돌봄 지원조례 제6조 (’23 1. 1.)	여성가족국 (아동돌봄과) 031-8008-3093		○	
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현행 아동급식카드 오프라인 직접 이용 방식에 배달앱 연계 온라인 방식 추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문·결제, 가맹점 위치 확인, 챗봇 1:1 질의응답 서비스 등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아동급식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(’23. 상반기 예정)	여성가족국 (아동돌봄과) 031-8008-3915			○ (대구)
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대상 : 도내 거주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</li> <li>지원내용 : 우울, 불안,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는 청년 대상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</li> </ul>	아동복지법 제35조, 제38조 (’23. 3. 예정.)	여성가족국 (아동돌봄과) 031-8008-4315		○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자립준비청년 멘토-멘티 함께서기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대상 : 도내 만 15세 이상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</li> <li>• 지원내용 : 개인별(1:1)·그룹별(1:다수)·전문가 멘토링, 커뮤니티 지원, 멘토 교육, 멘토링 활동 등</li> </ul>	아동복지법 제35조, 제38조 (’23. 3. 예정.)	여성가족국 (아동돌봄과) 031-8008-4315		○	
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원대상 : 입양가정위탁 아동</li> <li>◦ 지원내용 : 심리검사비, 치료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아동 외 입양부모 및 가정위탁 부모 지원 확대 - 심리 검사비(1회 30만원), 상담비(월 20만원) 지원</li> </ul>	아동복지법 제35조 (’23. 1. 1.)	여성가족국 (아동돌봄과) 031-8008-3073		○	
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원대상 : 보호종료 5년내 아동</li> <li>◦ 지원액 : 35만원 / 인, 월</li> <li>◦ 지급기간 : 5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액 상향 : 40만원 / 인, 월</li> </ul>	아동복지법 제38조 (’23. 1. 1.)	여성가족국 (아동돌봄과) 031-8008-2588		○	
‘경기여성취업 지원금’ 상향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대상 :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~59세 미취업 여성</li> <li>◦ 지원내용 : 취업지원금 1인당 90만원(30만원×3개월)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취업지원금 상향 지원(1인당) - 90만원(30만원×3개월) → 120만원(40만원×3개월)</li> </ul>	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8조 (’23. 1. 1.)	여성가족국 (일가정지원과) 031-8030-3232			○ (고용 노동부, 강원도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	◦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- 지급금액 : 356~1,365천원	•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'22년 대비 3.1% 인상 - 지급금액 : 367~1,407천원	경기도 공무원 등 운영규정 제125조 ( '23. 1. 1.)	노동국 (노동정책과) 031-8030-2593		○	
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지원	< 신 규 >	• 신규 「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」 설치 시·군에 설치비 지원 - (지원금액) 센터당 5천만원 이내 - (지원내용) 시설개선 및 사무기기·비품 구입	경기도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( '23. 1. 예정.)	노동국 (노동정책과) 031-8030-2593		○	
경기도 생활임금제 운영	◦ '22년 생활임금 : 11,141원 (월 232만원)	• '23년 생활임금 '22년 대비 3.1% 인상 : 11,485원(월 240만원)	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( '23. 1. 1.)	노동국 (노동정책과) 031-8030-2595			○ (서울 등 16개 시도)
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등 지원	< 신 규 >	• 목적 :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및 복지 증진 • 사업비 : 800백만원(도비 366, 시비 434) • 지원대상 : 50인 미만 사업체 우선 지원, 영세사업장 개별 노동자 등 • 운영방법 : 사업장별 수거 → 세탁 → 배송서비스 - 세탁요금(안) 상하복1벌 1,000원 ~ 2,000원(동복) ※ 세탁요금은 변동 될 수 있음 • 추진방식 : 시군 보조사업 - '23년 추진 : 안산시, 시흥시	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( '23./개소일 미정)	노동국 (노동권익과) 031-8030-4612		○	

### 3 산업·경제, 농어업·축산·산림 분야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실증특례 승인기업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6개 내·외 기업 지원, 기업당 최대 1억 1,500만원 지원 (기업 자부담 50%)</li> </ul> </li> <li>맞춤형 사전 컨설팅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간 20개 내·외 기업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실증특례 승인기업 지원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기업 대상 수 확대 및 기업 자부담 비율 완화</li> </ul> </li> <li>맞춤형 사전 컨설팅 지원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기업 대상 수 확대, 사후관리 강화 등</li> </ul> </li> </ul>	2023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계획 (’23. 1. 예정)	기획조정실 (규제개혁담당관) 031-8008-4287			○ (서울, 경북)
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목적)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</li> <li>(사업내용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대상) 도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</li> <li>- (내용) 기숙사 임차료(월세) 80% 이내 지원</li> </ul> </li> <li>(지원한도) 기업별 5인 이내, 1인당 30만원(월) 한도, 연 최대 10개월 이내</li> </ul>	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(’23. 1. 1.)	경제실 (특화기업지원과) 031-8030-3034			○ (경기 등 10개 광역사 도)
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보험료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목적) 중소기업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해 제조물 책임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, 기업 신뢰도 향상과 소비자 보호</li> <li>(사업 대상) 도내 중소기업 약 500개사</li> <li>(사업 내용)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제조자의 책임을 보상하는 제조물책임보험료 일부 지원</li> <li>(지원한도) 기업당 최대 1백만원 지원(보험료 20% 내)</li> </ul>	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3항 (’23. 1. 1.)	경제실 (특화기업지원과) 031-8030-3042		○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목적)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제조업 혁신과 녹색혁신 촉진</li> <li>• (사업 대상) 중소 제조기업(50개사)</li> <li>• (사업 내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사전진단, 35개사) 디지털전환 필요성 진단 및 자문</li> <li>- (전문컨설팅, 15개사) 사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 맞춤형 심층 컨설팅 지원(사업전환, 공정전환 등)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('22.7.19.), 경기도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5조의1 ('23. 1. 1.)	경제실 (특화기업지원과) 031-8030-3014		○	
뿌리산업 기술혁신 R&D연계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목적) 뿌리기업의 신제품 개발, 품질 고도화 탄소 중립 등을 통한 기업 부가가치 향상 및 발전기반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대상) 도내 소재 뿌리기업</li> <li>- (내용) 산업환경 변화 대응,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, 신사업 창출 등 뿌리기업 맞춤형 R&amp;D지원</li> </ul> </li> <li>• (지원한도) 기업당 9천만원 이내</li> </ul>	경기도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('23. 1. 1.)	경제실 (특화기업지원과) 031-8030-2726		○	
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원형태 : 시군보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비 35%, 시군비 35%, 자부담 30%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형태 : 시군보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비 40%, 시군비 40%, 자부담 20%</li> <li>※ '23년 한시적 자부담 10% 경감 운영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('23. 1. 1.)	경제실 (특화기업지원과) 031-8030-3034		○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요 지원 내용</li> <li>- ESG 인식개선 교육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보급</li> <li>-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(50개사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요 지원 내용 &lt;추가·확대&gt;</li> <li>-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컨설팅</li> <li>- 도내 전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 지원</li> <li>- ESG 인식확산을 위한 수준별(기초/심화) 온라인/오프라인 교육 병행</li> <li>-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확대(100개사)</li> </ul>	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('23. 1. 1.)	경제실 (특화기업지원과) 031-8030-2993		○	
경기도 자율협력주행버스 (판타G버스) 운행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기도 자율협력주행버스(판타G버스) 시범운영</li> <li>- (운영시기) 2023. 1월 ~</li> <li>- (이용방법) 노선버스와 동일하게 정류장 탑승(무상운행)</li> <li>- (운영노선) 판교역(1TV)→경기기업성장센터(2TV) ※9개소 정차</li> <li>- (운영시간) 평일(06:30~22:40), 주말(07:30~20:00) ※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운행 가능</li> <li>- (배차간격) 첨두시(30분), 비첨두시(50분), 주말(1시간)</li> </ul>	자율주행 자동차법 ('23. 1월)	경제실 (미래산업과) 031-8008-5344		○	
납품단가 연동제 도입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</li> <li>- 납품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인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10이내 범위에서 변동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연동하여 조정</li> <li>-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</li> <li>※(적용제외) 소기업, 납품대금 1억이하, 계약기간 90일 이내,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 약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</li> </ul>	상생협력법 제2조, 제21조 등 ('23. 10. 4)	공정국 (공정경제과) 031-8008-2285	○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신설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목적) 민간기업 ESG 유치, 사회혁신조직 창출, 각종 자원연계 및 성장지원을 추동할 통합지원법인 설립·운영</li> <li>• (사업내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양한 테마별 사회혁신경제조직 발굴, 역량강화 교육</li> <li>- 사회난제 해결중심 협업촉진, 혼합금융 활성화 등</li> </ul> </li> <li>• (참고사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회적경제 영역을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6조의8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으로 확장</li> <li>- 소셜벤처펀드 조성을 통한 민간 ESG 자원연계 시스템 구축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(’23. 1. 예정.)	소통협치국 (사회적경제과) 031-8008-3418		○	
숲경영체험림 조성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림체험 및 임업인 소득 창출 위한 산림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건 : 산림경영계획 인가된 산림</li> <li>- 내용 : 임업경영(영림업·임산물생산업) 체험</li> </ul> </li> </ul>	산림휴양법 제21조의3 (’23. 6. 예정.)	축산산림국 (산림과) 031-8030-3574 031-8030-3563	○		
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림기술 응용한 산림사업의 설계·감리 용역비 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예정가격 산출기준: 실비정액가산, 공사비용율</li> </ul> </li> </ul>	산림기술법 제21조 (’23. 1. 예정.)	축산산림국 (산림과) 031-8030-3565	○		
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득 : 전년 종합소득금액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득 : 퇴직자, 사업자등록말소자는 ‘농업외소득’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자소득 제외</li> <li>- 협업·공동사업은 심사 시 가점(신설)</li> </ul> </li> </ul>	2023년 산림사업종합 자금 집행지침 (’23. 1. 1.)	축산산림국 (산림과) 031-8030-3563	○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목재제품 신기술 보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기술 보호기간 - 지정·고시일로부터 3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기술의 보호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- 신기술의 지정·고시일로부터 4년</li> </ul>	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('23. 1. 예정.)	축산산림국 (산림과) 031-8030-3564	○		
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심사기준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조사업자 심사기준 - 중복지원 업체 심사 제외 - 국산원목 수급 10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산목재 활용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개정 - 국산목재 취급 업체에 한하여 중복지원 가능 - 국산원목 수급 기준 배점 20점으로 상향</li> </ul>	목재산업 현대화사업집행 지침 제4조 ('23. 1. 1.)	축산산림국 (산림과) 031-8030-3564	○		
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농기 허가 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에서 아래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 으면 소각 및 불농기 가능 -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경우 - 조림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하기 위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불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던 불을 이용하여 인화물질을 제거하거나 조림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하는 행위 금지 - 논밭두렁 태우기,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불농기 허가 금지 - 조림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위한 불농기 허가 금지</li> </ul>	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('22. 11. 15.)	축산산림국 (산림과) 031-8030-3552	○		
나무병원(2종) 유효기간 종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림보호법 규정에 의한 나무 병원 1종 및 2종 등록·운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종 나무병원의 유효기간은 2023.6.27.까지이므로 나무병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종 나무병원 으로 변경등록 하여야 함.</li> </ul>	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 제1항 ('23. 6. 28.)	축산산림국 (산림과) 031-8030-3554	○		

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수산공익직불제 신규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</li> <li>② 경영이양 직불제</li> <li>③ 수산자원보호 직불제</li> <li>④ 친환경수산물생산 직불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‘소규모어가 직불제’ 및 ‘어선원 직불제’ 신설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을 직불제 대상으로 편입시켜 수산 공익직불제 확대 시행</li> </ul> </li> </ul>	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(’23. 4. 예정.)	농정해양국 (해양수산과) 031-8008-4526	○		
수산공익직불제 (경영이양직불제)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영이양직불제 신청연령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만65세 ~ 만75세 미만</li> </ul> </li> <li>○ 어촌계원 자격유지 기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0년 이상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신청연령을 만65세 ~ 만80세 미만으로 확대, 어촌계원 자격유지 기간을 ‘10년 이상’에서 ‘5년 이상’으로 변경</li> </ul>					
어구의 전생애주기에 따른 관리체계 도입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어구의 생산단계 관리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어구생산업, 판매업이 신설되며 신고제로 운영</li> </ul> </li> <li>● 어구의 판매단계 관리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어구 실태조사, 어구의 판매량, 판매장소 등을 제한</li> </ul> </li> <li>● 어구의 사용단계 관리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“어구실명제”의 법제화</li> </ul> </li> <li>● 어구의 수거·처리단계 관리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·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하여 해당해역을 집중정화하는 “어구일제 회수제도”도입</li> <li>- 행정관청은 어구집하장 등의 설치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위탁</li> </ul> </li> </ul>	수산업법 (’23. 1. 12.)	농정해양국 (해양수산과) 031-8008-4547	○		

## 4

## 환경, 도시·교통·건설 분야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목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물 투명창, 투명 방음벽,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충돌·추락 피해를 최소화</li> </ul> </li> <li>• (내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경부장관이 관련 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음</li> <li>- 환경부장관은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야생동물 피해 방지 조치 요청할 수 있음</li> <li>- 국가는 해당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/ul>	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('23. 6. 11.)	환경국 (환경정책과) 031-8008-3513	○		
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경유 자동차(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09.8.31.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경유 자동차(배출가스 4·5등급 경유자동차)</li> <li>- '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중 건설기계(지게차, 굴착기)</li> </ul> </li> </ul>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('23. 1. 1.)	환경국 (미세먼지대책과) 031-8008-3618	○		
경유사용 어린이통학차량 신규 등록 금지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정용도 자동차로서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 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</li> </ul> </li> </ul>	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('23. 4. 3.)	환경국 (미세먼지대책과) 031-8008-4288	○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																						
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표출장치 설치 및 결과 공개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하역사 승강장 및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표출장치를 설치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 공개</li> </ul>	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(’23. 1. 1.)	환경국 (미세먼지대책과) 031-8008-4118	○																								
특정대기유해물질 (8종) 배출허용기준 설정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신설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대기오염물질</th> <th>배출허용기준</th> <th>대기오염물질</th> <th>배출허용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아닐린</td> <td>25ppm 이하</td> <td>에틸렌옥사이드</td> <td>3ppm 이하</td> </tr> <tr> <td>프로필렌옥사이드</td> <td>90ppm 이하</td> <td>벤지딘</td> <td>2ppm 이하</td> </tr> <tr> <td>아세트알데하이드</td> <td>10ppm 이하</td> <td rowspan="3">베릴륨화합물</td> <td>(소각) 0.05mg/Sm<sup>3</sup> 이하</td> </tr> <tr> <td>이황화메틸</td> <td>3ppm 이하</td> <td>(발전) 0.04mg/Sm<sup>3</sup> 이하</td> </tr> <tr> <td>히드라진</td> <td>15ppm 이하</td> <td>(제조) 0.04mg/Sm<sup>3</sup> 이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기오염물질	배출허용기준	대기오염물질	배출허용기준	아닐린	25ppm 이하	에틸렌옥사이드	3ppm 이하	프로필렌옥사이드	90ppm 이하	벤지딘	2ppm 이하	아세트알데하이드	10ppm 이하	베릴륨화합물	(소각) 0.05mg/Sm <sup>3</sup> 이하	이황화메틸	3ppm 이하	(발전) 0.04mg/Sm <sup>3</sup> 이하	히드라진	15ppm 이하	(제조) 0.04mg/Sm <sup>3</sup> 이하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(’23. 1. 1.)	환경국 (환경안전관리과, 북부환경관리과) 031-8008-5247	○		
대기오염물질	배출허용기준	대기오염물질	배출허용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
아닐린	25ppm 이하	에틸렌옥사이드	3ppm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
프로필렌옥사이드	90ppm 이하	벤지딘	2ppm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
아세트알데하이드	10ppm 이하	베릴륨화합물	(소각) 0.05mg/Sm <sup>3</sup>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
이황화메틸	3ppm 이하		(발전) 0.04mg/Sm <sup>3</sup>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
히드라진	15ppm 이하		(제조) 0.04mg/Sm <sup>3</sup>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스열펌프(GHP) 대기배출시설 편입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스열펌프(GHP) 대기배출시설 편입 및 기준 설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적용시기 : 신규시설(’23.1.~), 기존시설(’25.1.~)</li> <li>- 배출기준(ppm) : NOx 50, CO 300, THC 300</li> <li>※ 배출허용기준의 30%미만 배출, 저감장치 부착 시 제외</li> </ul> </li> <li>가스열펌프(GHP) 저감장치* 설치비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설치 시 대기배출시설 제외</li> <li>- 대상 : 기 운영시설 중 내구연한(15년) 미도래 시설</li> <li>- 내용 : GHP 저감장치 설치비용의 90%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, 제15조 (’23. 1. 1.)	환경국 (환경안전관리과, 북부환경관리과) 031-8008-3556 031-8030-4242	○																						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이동소음원 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이동소음원 종류</li> <li>1.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</li> <li>2.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</li> <li>3.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</li> <li>4. <u>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·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</u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이동소음원 추가 지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 : 「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1항4호에 따라 이동소음원 ‘배기소음 95dB초과 이륜차’ 추가</li> <li>- 이동소음원 지정 권한 : 관할 시·군</li> </ul> </li> </ul>	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('22. 11. 2.) ※ 환경부 고시 [환경부령2022-212호]	환경국 (환경안전관리과) 031-8008-3555	○		
주거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주거급여(임차급여) 지원 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위소득 46% 이하 가구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주거급여(임차급여) 지원 기준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위소득 46% → 47% 이하로 확대</li> </ul> </li> </ul>	주거급여법 제5조 ('23. 1. 1.)	도시주택실 (주택정책과) 031-8008-3234	○		
사업장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 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배출허용기준 37항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반대기오염물질 13항목</li> <li>- 특정대기오염물질 24항목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배출허용기준 설정 항목 45항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반대기오염물질 13항목(중전과 동일)</li> <li>- 특정대기오염물질 32항목(8항목 추가)</li> </ul>               &lt;아세트알데하이드, 히드라진, 베릴륨 및 그 화합물, 폴리염화비페닐, 다이옥신,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, 이황화메틸, 아닐린&gt;             </li> </ul>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('23. 1. 1.)	보건환경연구원 (대기환경연구부) 031-8008-9608	○		

## 5 재난안전, 문화·체육·관광 분야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화재안전조사 시행	◦ 소방특별조사 - 7일전까지 서면 통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화재안전조사로 명칭 변경</li> <li>• 사전통지 및 조사범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편, 전화, 전자메일, 문자 등으로 사전통지</li> <li>- 종합 또는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실시</li> </ul> </li> <li>• 조사결과 공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한 공개</li> </ul> </li> </ul>	화재예방법 제8조, 제16조 (’22. 12. 1.)	소방재난본부 (재난예방과) 031-230-2874	○		
건축허가 동의시 검토사항 확대	◦ 소방서장은 소방시설법 및 관련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규 검토사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</li> <li>- 「건축법」에 따른 피난시설, 방화구획, 소방관 진입창, 방화벽, 마감재료 등</li> <li>-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</li> </ul> </li> </ul>	소방시설법 제6조 (’22. 12. 1.)	소방재난본부 (재난예방과) 031-230-2862	○		
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종류 확대	◦ 소화기, 간이소화장치, 비상경보장치, 간이피난유도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존 4종 + 추가 3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스누설경보기, 방화포, 비상조명등</li> </ul> </li> </ul>	소방시설법 제15조 (’23. 7. 1.)	소방재난본부 (재난예방과) 031-230-2862	○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자체점검 제도 강화	◦ 사용승인일 1년 이후부터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방시설등 신설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, 이후 매년 실시</li> <li>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 즉시 수리</li> <li>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·교체·정비 이행계획 제출</li> </ul>	소방시설법 제22조, 제23조 (’22. 12. 1.)	소방재난본부 (재난예방과) 031-230-2876	○		
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특급 및 1급 대상 타 법령 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일시적 겸직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	화재예방법 제24조 (’22. 12. 1.)	소방재난본부 (재난예방과) 031-230-2862	○		
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선임기간)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~ 사용승인일</li> <li>- (자격요건) 소방안전관리자격증 소지 + 교육이수자</li> </ul> </li> <li>선임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축등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1만 5천㎡ 이상</li> <li>- 연면적 5천㎡ 이상 + 지하층 층수 2개층 이상</li> <li>- 연면적 5천㎡ 이상 + 지상층 층수 11층 이상</li> <li>- 냉동창고, 냉장창고 또는 냉동·냉장창고</li> </ul> </li> </ul>	화재예방법 제29조 (’22. 12. 1.)	소방재난본부 (재난예방과) 031-230-2862	○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“특급 및 1급” 대상물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0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</li> </ul> </li> </ul>	화재예방법 제37조 (’22. 12. 1.)	소방재난본부 (재난대응과) 031-230-4553	○		
불시 소방훈련· 교육 (필요 시)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불특정 다수이용 대상물의 불시 소방훈련·교육 실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“의료·교육연구·노유자시설” 및 다수 인명피해 예상되는 특정소방대상물</li> <li>- 훈련 내용, 방법, 절차 등 관계인에게 사전 통지</li> </ul> </li> </ul>	화재예방법 제37조 (’22. 12. 1.)	소방재난본부 (재난대응과) 031-230-4553	○		
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 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필기시험 과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채 : 5과목, 경채 : 3과목</li> </ul> </li> <li>가점 확대 및 가산방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점분야 : 2개 분야</li> <li>- 부여시기 : 필기시험</li> </ul> </li> <li>시험단계별 적용비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채, 경채 : 필기75 : 체력15 : 면접10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필기시험 과목 변경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사, 영어 과목의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</li> <li>※ 공채 : 3과목, 경채 : 2과목</li> </ul> </li> <li>가점 확대 및 가산방법 변경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점분야 : 4개 분야</li> <li>- 부여시기 : 최종 환산점수</li> </ul> </li> <li>시험단계별 적용비율 변경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채, 경채 : 필기 50 : 체력 25 : 면접 25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</li> <li>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</li> <li>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(’23. 1. 1.)</li> </ul>	소방재난본부 (인사담당관) 031-230-0321	○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(문화누리카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에게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을 위해 연간 10만원 '문화누리카드'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인당 1만 원 증액 - 연간 10만원 → 연간 11만원 지원</li> </ul>	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('22. 12. 8.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종무과) 031-8008-4656	○		
'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'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기서·남·북부권역 중심 운영 - 동부권역 수혜 사각지대 및 권역별 격차 발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기 동부권역 특화 창업지원/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·운영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</li> <li>'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' 운영(여주시 청심로 88)</li> <li>지역자원 콘텐츠 및 생활양식(Life style) 융·복합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</li> </ul>	경기도 자체 계획 ('23. 1. 1.)	문화체육관광국 (콘텐츠정책과) 031-8008-4653		○	
K-콘텐츠 IP융·복합 제작(사업화)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내 우수 콘텐츠 IP 융·복합 사례 발굴 및 관련 스타트업 육성</li> <li>(발굴지원) 원천 콘텐츠 IP 조사 및 자료화</li> <li>(제작 지원) 우수 프로젝트 20개 내외 선정 제작지원금 차등 지급 및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</li> <li>(사업화 지원) 홍보마케팅, 전시 등 시장진출 지원</li> </ul>	경기도 자체 계획 ('23. 3. 예정.)	문화체육관광국 (콘텐츠정책과) 031-8008-4653		○	
K-콘텐츠 영화영상물·음악 제작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내 영화·영상물 기획개발(제작)비용 지원 및 음원 제작·유통 지원</li> <li>(영화·영상) 기존 저예산 독립영화 지원사업과 구분되는 중견제작사 지원</li> <li>(애니메이션) 스토리IP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및 신규 IP 발굴 지원</li> <li>(음악) 도내 음악인들의 음원제작 및 국내외 서비스 플랫폼 유통지원을 통한 콘텐츠IP 활성화 지원</li> </ul>	경기도 자체 계획 ('23. 3. 예정)	문화체육관광국 (콘텐츠정책과) 031-8008-4651		○	

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실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시군 : 28개 시군(수원, 용인, 성남제외)</li> <li>- 지원대상 : 도내 거주,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120%이하에 해당하는 자</li> <li>- 지원금액 : 연120만원 /1회 지급</li> <li>- 지급방법 : 개인별 현금지급</li> <li>- 지원절차 : 시·군 문화예술담당부서에 신청·지급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(’23. 하반기 예정)	문화체육관광국 (예술정책과) 031-8008-4693		○	
경기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만5~18세 저소득 유청소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금액 : 매월 85천원</li> <li>- 지원기간 : 연간 10개월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내용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금액 : 매월 85천원 --&gt; 매월 95천원</li> <li>- 지원기간 : 연간 10개월 --&gt; 연간 12개월</li> </ul> </li> </ul>	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(’23. 1. 1.)	문화체육관광국 (체육과) 031-8008-4534		○	
경기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만19~64세 등록장애인대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금액 : 매월 85천원</li> <li>- 지원기간 : 연간 10개월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내용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금액 : 매월 85천원 --&gt; 매월 95천원</li> <li>- 지원기간 : 연간 10개월 --&gt; 연간 12개월</li> </ul> </li> </ul>	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(’23. 1. 1.)	문화체육관광국 (체육과) 031-8008-4534		○	
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’22년 경기종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체육대회 25개 종목</li> <li>※ 정식종목 23개, 시범종목 2개</li> <li>- 생활체육대축전 24개 종목</li> <li>※ 일반부 정식종목 20개, 시범종목 4개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’23년 시범종목 추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체육대회 : 산악, 댄스스포츠</li> <li>- 생활체육대축전 : 수영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자체계획 (’23. 1. 예정.)	문화체육관광국 (체육과) 031-8008-3313		○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/연락처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대상 : 도내 노인(70세 이상), 장애인</li> <li>- 지원내용 : 도내 연고 프로스포츠단(12개) 홈경기 관람료 75% 지원* (자부담 25%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동반 보호자 1인 포함</li> </ul> </li> <li>- 지원종목 : 축구, 야구, 농구, 배구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자체계획 (’23. 1. 예정.)	문화체육관광국 (체육과) 031-8008-4535 031-8008-4703		○	
독립야구 경기도리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기도리그 운영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6개팀, 128경기</li> <li>- 지원예산 : 12.5억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선수출전수당 신설 * 1인당 48만원 수준(월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출전수당(4억원) : 경기당 8만원 × 20명 × 2팀 × 128경기</li> <li>☞ 선수들의 회비 등 재정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운동여건 조성</li> </ul> </li> </ul>	「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 (’23. 1. 1.)	문화체육관광국 (체육과) 031-8008-4710		○	
관광특구 지정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관광특구 지정 등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광특구의 지정, 지정취소, 평가 등 시·도에서 수행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관광특구 지정 등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부여(시·도 ⇒ 시·도, 특례시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례시 4곳 : 수원, 고양, 용인, 창원</li> </ul> </li> </ul>	관광진흥법 제70조, 제70조의2, 제73조 (’23. 5. 4.)	문화체육관광국 (관광과) 031-8008-3335	○		